

大田直轄市決算検査委員選任 및 운영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

議案番號	478
------	-----

提出年月日 : 1994 . . .

提出者 : 大田直轄市長

1. 提案理由

現行 大田直轄市決算検査委員選任 및 운영에 관한 條例中 地方自治法施行令 第46條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이 改正되어 檢査委員의 定數를 擴大하고 決算検査期間中 委員의 日費를 議員의 日費와 같게 上向調整하고자 하는것임

2. 主要骨子

- 가. 現行 委員의 定數는 5人 以内로 되어 있으나, 앞으로는 委員의 定數를 5人 以上 10人 以下로 하도록 함(案 第2條)
- 나. 決算検査委員의 選任方法에 있어 委員中 地方議會議員의 數는 檢査委員數의 3분의 1을 超過할 수 없도록 함 (案 第3條 第1項)
- 다. 決算検査期間中 委員의 日費를 現行 50,000원에서 60,000원으로 上向하고자함
(案 別表 2)

3. 參考事項(關聯法規)

地方自治法施行令

第46條(檢査委員의 選任) ①法 第125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委員의 數는 市·道의 경우에는 5人以上 10人以下, 市·郡 및 自治區의 경우에는 3人以上 5人以下로 하되, 그 定數·選任方法·運營 및 實費報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.

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委員은 당해 地方議會 議員이나 公認會計士等 財務管理에 관한 專門知識과 經驗을 가진 者중에서 選任한다.

이 경우 地方議會議員은 檢査委員數의 3분의 1을 超過할 수 없다.

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

대전직할시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

대전직할시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위원의 정수) 위원의 정수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.

제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별표 제2호 중 일비 액수 “50,000원” 을 “60,000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 조 문 대 조 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
<p>제2조 (위원의 정수) 위원의 정수는 5인 이내 로 한다.</p> <p>제3조 (선임방법 및 절차)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. 다만, 위원 중 2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 하는 자로 할 수 있다. ② ~ ④ (생략)</p>	<p>제2조 (위원의 정수) 위원의 정수는 5인이상 10인이하로 한다</p> <p>제3조 (선임방법 및 절차)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 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												
<p>< 별표 제 2 호 >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<th>액 수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일 비</td><td>50,000</td></tr> <tr> <td>여 비</td><td>(생 략)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액 수	일 비	50,000	여 비	(생 략)	<p>< 별표 제 2 호 >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<th>액 수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일 비</td><td>60,000</td></tr> <tr> <td>여 비</td><td>(현행과 같음)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액 수	일 비	60,000	여 비	(현행과 같음)
구 분	액 수												
일 비	50,000												
여 비	(생 략)												
구 분	액 수												
일 비	60,000												
여 비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

大田直轄市決算検査委員選任 및 運營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

審　　查　　報　　告

1994年 11月8日

内務委員會

I. 審査經過

1. 提出日字 및 提案者 : 1994年 10月 29日 大田直轄市長
2. 回 附 日 字 : 1994年 10月 31日
3. 上 程 日 字 : 第36回 大田直轄市議會 (臨時會)
第1次 内務委員會 (1994. 11. 8)
上程, 審議, 原案可決

II. 提案說明要旨 (提案說明者 : 財務局長)

1. 提案理由

現在 大田直轄市決算検査委員選任 및 運營에 관한 條例中 地方自治法施行令 第46條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이 改正되어 檢査委員의 定數를 擴大하고 決算検査期間中 委員의 日費를 議員의 日費와 같게 上向調整하고자 하는 것임.

2. 主要骨子

- 가. 現行 委員의 定數는 5人 以內로 되어 있으나, 앞으로는 委員의 定數를 5人 以上 10人 以下로 하도록 함. (案 第2條)
- 나. 決算検査委員의 選任方法에 있어 委員中 地方議會議員의 數는 檢査委員數의 3분의 1을 超過할 수 없도록 함. (案 第3條 第1項)
- 다. 決算検査期間中 委員의 日費를 現行 50,000원에서 60,000원으로 上向하고자 함.

III. 專門委員 檢討要旨 (專門委員 : 鄭鎮喆)

本案件은 地方自治團體의 豫算決算検査委員選任 및 運營에 관한事項을 規定하고 있는 地方自治法 施行令이 改正됨에 따라서 關聯條例를 整備하려는 內容임.

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

지난 7月 6日字 地方自治團體 豫算決算検査의 根據 規定인 地方自治法 施行令 第46條 第1項 및 第2項이 改正됨에 따라서 案 第2條의 委員定數를 現行 “5人 以內”에서 “10人 以下”로 變更하고 案 第3條의 委員選任 方法에서 2人은 地方自治團體長이 推薦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이를 削除하고 위원중 地方議會 議員의 數를 全體委員중 3분의 1를 超過할 수 없도록 하였음.

그리고 檢査委員의 日費를 現行 50,000원에서 60,000원으로 上向調整하려는 것으로 이는 大田直轄市議會 議員 日費 및 旅費支給에 관한 條例 第6條의 規定과 同一하게 調整한 것임.

本 改正案은 관련 地方自治法 施行令의 改正과 委員 일비의 現實化側面에서 調整하는 것으로 本案과 같이 改正 運營함이 妥當할 것으로 思料됨.

IV. 討 論 要 旨 : 省 略

V. 質 疑 및 答 辯 要 旨 : 省 略

VI. 審 査 結 果 : 原案可決